

## 2026년 판교 창업존 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(연장)

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창업기업 보육 역량, 우수한 인적·물적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갖춘 『판교 창업존 운영사업』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\* (당초 신청기한) ~12.19.(금) 16시 → (변경 신청기한) ~12.29.(월) 16시

2025년 12월 22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창업존 입주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창업존 입주기업은 별도로 모집 예정입니다.
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·사업화, 투자 연계, 글로벌 진출 등 성장 지원

<판교 창업존 현황>

- 위치·면적 : 판교 제2밸리 기업지원허브 6~8층, 10,401.8㎡ (3,152평)
- 구성 : 창업기업 사무공간 136개, 규모별 회의실 48개, 수면실·샤워실, 통번역센터,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



#### □ 선정규모 및 예산

- 선정규모 : 1개 기관
- 지원예산 : 年 10억원 내외 (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<정부지원사업비 등 주요 지원 내용(안)>

구분	세부 내용	지원예산
인프라 지원	시설유지보수 등	3억원 내외
주관기관 운영비	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3억원 내외
프로그램 운영비	네트워킹, 교육 등 입주기업 성장지원	4억원 내외

\* 입주 창업기업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·관리비 수익금이 포함됨

○ 지원기간 : '26. 1. 1. ~ '27. 10. 31.(22개월)

- 협약기간은 선정 및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2.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○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(단체)

- 단,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알리오)에 공시된 기관은 제외  
(접수 마감일 기준)

-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
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  - \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('25.12.19.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### □ 신청요건(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#### ①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

- 주관기관 내 창업존 운영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함

- 사업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\*을 제외하고, 최소 6명 이상의 전담인력\*\*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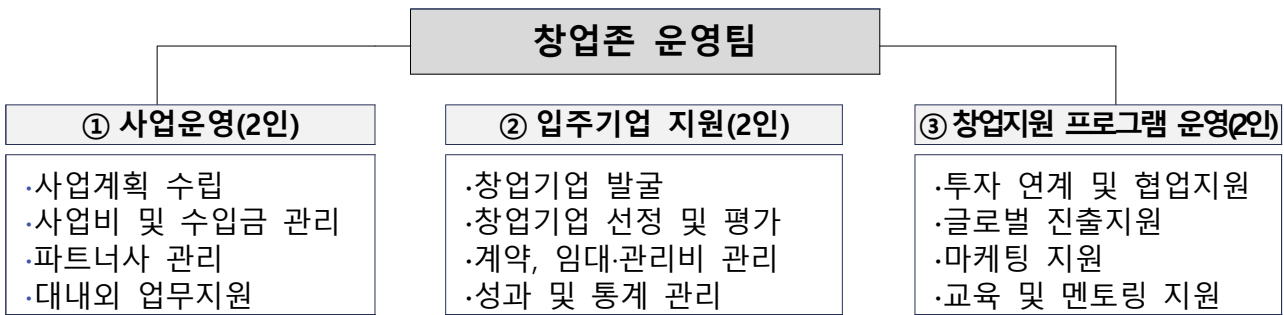
\* 창업 지원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로 인건비를 산정

\*\* 창업존 운영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인력을 의미하며, 전담인력에 한하여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로 인건비 지급 가능

- 전담인력(전담조직의 장을 제외)은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

\* 주관기관 선정 후 즉시 투입 가능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, 6개월간 사업선정 당시 확보된 전담인력을 유지하여야 함

<창업존 사업 전담조직(예시)>



## ② 자기부담사업비 투입

- 지원금(프로그램 운영비+주관기관 운영비, '26년 기준 7억원)의 10% 이상을 자기부담사업비(현금 또는 현물)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주관기관 운영에 사용(타 사업 또는 기관 자체의 운영경비로 사용 불가)

<자기부담사업비(현금, 현물) 산정기준>

구분	산정기준
현금	· 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(통장 입금 내역서, 대응투자 협약서 등)
현물 (인건비 등)	·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*의 인건비 *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만 해당하며, 신규인력은 제외 ·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x 참여 개월 수* x 참여율 *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('26.1월~'26.12월, 12개월)만 산정 · 입주기업 직접지원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비용의 10% 인정

### 3. 주관기관 역할

#### ① 입주기업 지원·관리

- 유망 창업기업 발굴·선정, 입주공간 배정·조정,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성과·통계 관리 등

<창업존 공간구성 현황>

구 분	세부내용
6층	대회의실(1개), 교육장(1개), 세미나실(각 1개), 소회의실(4개), 미팅룸(4개) 등
7층	입주기업 사무실(76개), 회의실(15개), 통번역센터, 글로벌테스트베드 등
8층	입주기업 사무실(63개), 회의실(18개), 운영사무실(1개) 등

\* 입주기업 사무실은 개방형, 독립형 형태로 구성

\*\* 입주기업 사무실 등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파트너사 입주 지원

- 임대·관리비 부과·징수, 미수금 관리 등
- 통번역, 글로벌테스트베드 등 입주사 경영활동을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운영·관리 지원

<창업존 서비스지원 인프라 현황>

구 분	전용면적	지원내용	비 고
운영지원실	19.8m <sup>2</sup>	입주계약 임대관리비 징수 대행 시설 대관 관리 등	-
통번역센터	36.4m <sup>2</sup>	영어, 중국어, 일본어 통·번역 지원	-
글로벌테스트베드	64.9m <sup>2</sup>	해외 통산망 테스트, APP테스트, 시험지원 컨설팅 등	스마트 디바이스 등 80여대 보유

#### ② 창업기업 성장지원

- 입주사의 사업단계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유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기관의 역량 및 파트너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, 네트워킹 활성화
-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창업기업 발굴·육성,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 창업기업 성장 지원

### ③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

- 창업자, AC/VC, 대기업·중견, 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

\* 지역 내 창업기업 등 창업생태계 구성 주체 관련 DB 구축 및 관리 필요

## 4. 선정절차 및 기준

### □ 선정절차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 이해도, 계획 적절성 등 평가

<서류평가 항목구성>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사업 이해도	- 사업 추진방향의 이해도 - 사업 취지와와의 적합성 - 경기·판교지역 창업생태계 특성 및 창업자 이해도	20
사업계획의 적절성	- 사업목표의 타당성 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- 기존 운영과의 개선 및 발전방향의 적정성	30
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	-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성 -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30
유사사업 수행 경험	- 공간, 시설 등 인프라 운영 경험 - 창업기업 보육, 사업화 등 지원 경험	10
사업비 구성의 적절성	- 자기부담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- 정부지원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10
<b>합 계</b>		<b>100</b>

- (발표평가) ① 사업 참여의지 ② 사업추진 역량 ③ 지원 계획의 적정성 ④ 외부기관 연계계획의 구체성 ⑤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발표평가 항목구성>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사업 참여의지	- 주관기관 및 사업 총괄자의 사업추진 의지	10
사업 추진 역량	-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의 전문성 - 유사사업 수행 경험 - 타 기관과의 사업 추진 역량과의 차별성	30
성장지원 계획의 적정성	-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-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- 인프라 구성·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	20
외부기관 연계계획의 구체성	- 보유 네트워크의 우수성 - 네트워크 연계방안의 구체성 및 체계성 - 파트너사 발굴 및 입주지원 계획의 구체성	20
성과창출 가능성	- 우수 창업기업 배출 가능성 -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-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파급 효과	20
<b>합 계</b>		<b>100</b>

□ 최종선정

- 서류평가(40%), 발표평가(60%)를 종합하여 최종 확정

\* 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사업 운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추진일정(안)

<주관기관 선정 추진일정(안)>

구 분	내 용	기 간	비 고
모집·신청	온라인 공고 및 신청(K-Startup)	'25.12.9.~12.29.	창업진흥원
↓			
선정평가	서류* 평가 및 발표** 평가 * 사업계획서 평가 ** 발표 15분 내외, 질의 15분 내외	'25.12.30.	창업진흥원
↓			
선정 안내	선정 안내(공문)	'26.1월 초	창업진흥원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\*\*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32호의 연장 공고이며, 기간 내 추가 접수가 없는 경우 신청기관 대상 적격성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

## 5. 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5. 12. 9.(화) ~ 12. 29.(월) 16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(신청 방법)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 →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< K-Startup 접속 및 신청절차 >

① 회원가입(총괄 책임자 명의) → ② K-startup 접속→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→ ④ '2026년 창업존 주관기관 신규 모집' 공고 사업신청 클릭 →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체크 → ⑥ 기본정보(일반현황 및 인력정보) 입력 → ⑦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300MB 유의) → ⑧ 제출 → ⑨ 신청내역조회(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확인)

\*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여야 하며,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

- (제출 서류) 제출공문,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[붙임1],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[붙임2] 각 1부

\* 신청기간 이후,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하며, 발표자료(PT 등)는 서류평가 통과 기관(단체)에 한하여 별도 제출기한 안내 예정

## 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-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-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\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
\*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

-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청절차 및 서류 업로드는 정해진 신청·접수 기한(25.12.29(월) 16:00)까지 완료되어야 함
  - \* 서류 제출(업로드)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·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,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수정·보완·교체·추가 제출이 불가함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 및 이후에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  - 자기부담사업비 등 자금 확보,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 요건은 협약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
    - \*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
    - \*\*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,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 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 시,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·목적 외 사용,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 발생,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- 신청·접수 시스템(K-Startup) 문의 : 국번없이 1357
-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: 044-410-1802, 1927 ccei@kised.or.kr
- K-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(Quick Menu - 상담하기)